

서울고등법원


제 8 형 사 부

결 정

사 건 2006로16 기피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
 피 고 인 김명호  
 주 거 처  
 본 적 우  
 항 고 인 피고인  
 원 심 결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17.자 2006초기3130 결정

주 문

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.

위 등판한 다  
 2006년 10월 17일  
 서울중앙지방법원  
 형사부판사 김명호  


이 유

기록에 의하면,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2459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담당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2006초기3061호로 위 기피신청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하게 되었는데, 피고인이 2006. 10. 17. 재차 위 제1형사부의 재판장 판사 이강원에 대한 기피신청(이하 '이 사건 기피신청'이라 한다)을 하였으며, 위 제1형사부가 같은 날인 2006. 10. 17. 이 사건 기피신청은 소송 지연을 목

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, 피고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기록에 의하면,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6초기3061호 기피신청사건의 심리에서 위 제1형사부의 담당재판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2006. 10. 17. 위 2006초기3061호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제1형사부의 담당재판장을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되므로,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,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06. 12. 6.

재판장

판사

허만



판사

강상욱



판사

김용배

